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김윤희 부연구위원

요약¹⁾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 이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청년정책 행정부서는 어떠한지, 법률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OECD 국가(38개)에서 청년 하한 연령은 절반 이상이 10세에서 14세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15세에서 19세가 뒤를 이었음. 생애주기 접근으로 0세부터 포괄적으로 청년연령을 규정하는 국가는 7개였으며, 1세에서 9세가 4개의 국가로 가장 적었음.
- OECD 국가에서 상한 연령은 25세에서 29세가 19개 국가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0세에서 34세로 규정한 국가들은 10개로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는 20세에서 24세, 그리고 19세 이하와 35세에서 39세가 2개로 가장 적었고 40세 이상을 규정하는 곳은 없었음.
- 이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 중앙행정조직을 부·처·청과 위원회로 나누고 부·처·청은 명칭에 청년이나 생애전반기 정책대상을 포함한 경우(예: 청년부)와 하위 부서에 명칭을 포함한 경우(예: 청년정책실)를 나누어 살펴보았음. 부처형과 부서형, 그리고 위원회형으로 청년정책 중앙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부서형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처형이 14개로 뒤를 이었음. 위원회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9개로 가장 적었음. 청년정책 법률을 제정한 곳은 16개 국가였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 상한 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선거권(18세)에 맞춘 하한 연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정책 추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조직 명칭에 청년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기본법을 모범체제로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연구과제인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음. 2025년은 제1차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예정임.
-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 청년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에서 제시될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정의를 40대 이상을 포괄해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정책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청년 과제(89번)에서도 청년 연령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대한민국 정부, 2025).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 이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청년정책 행정부서는 어떠한지, 법률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우선 우리나라에서 청년 관련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연령 정의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연령구분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법률과 정책추진계획, 그리고 통계 작성 시 사용되는 연령 규정이 다를 수 있어서 연령 집단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김기현, 2021).
 - 연령집단은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에서 사용한 것을 참고하여 하한연령은 0세, 1-9세, 10-14세, 15-19세, 2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상한 연령은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두 번째로 OECD 국가에서 청년정책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행정조직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정책 심의와 조정,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자문기구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으로 나눌 수 있음. 청년정책과 같은 대상 중심 정책은 행정조직 명칭에 해당 대상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부 정책 추진의 위상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행정조직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청년정책 행정조직은 청년(youth) 명칭이나 생애전반기 명칭(child, children, young people)이 부(ministry)와 처, 청(administration, agency, bureau)에 포함되는 경우(예: 청년부)를 부처형으로 분류하였음. 이어서 부, 처, 청의 하위부서(department, directorate, division, office)에 생애 전반기 명칭이 포함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예: 청년정책실)를 부서형으로 분류하였음.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정부위원회나 자문기구 형태(board, cabinet, committee, commission, council, institute, secretariat, secretary)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위원회형으로 분류하였음. 각 국가의 부처 명칭은 영문으로 표기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스(youth, joven, jugend, jeunesse, nuoris, 若者, 青年, pemuda)의 경우 10대와 20대를 포괄하고 있어 청년 대신 젊은이로

표기하였음.

- 세 번째로 OECD 국가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법률 명칭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로만 제한해 분류하였음.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기존 문헌과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 OECD 국가들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 관련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에서 수집한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정은지, 김기현, 2018;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 2023; 이영란, 2024). 이 민간기구는 2014년 국제연합(UN)이 개최했던 제1회 청년정책에 대한 글로벌 포럼(the First Global Forum on Youth Policies)에서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담당했던 곳으로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만들어졌으며 198개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보고서와 447개의 논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Youthpolicy.org, 2025).
 - 이 민간기구는 2013년부터 각 국가별 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한 자료와 해당 정보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 각 국가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자료를 확인하여 수정하였음. 1차로 이 작업을 이미 진행했던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2023)과 이영란(2024: 37)의 연구 결과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수정하였음.

3. 연구결과

▶ OECD 국가들의 청년 연령 규정

- 우리나라는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은 법률과 정책 및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연령집단으로 범위를 정해 제시하였음.
- 이 경우에 법률에 있는 경우는 법률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계획보고서(blue paper, green paper)에서 정의한 연령을 고려하였음. 여기에서는 OECD 국가들의 청년연령 규정을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OECD 국가에서 하한 연령은 절반 이상이 10세에서 14세로 청년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15세에서 19세가 뒤를 이었음. 생애주기 접근으로 0세부터 포괄적으로 청년연령을 규정하는 국가는 7개였으며, 1세에서 9세가 4개의 국가로 가장 적었음.
- OECD 국가에서 상한 연령은 25세에서 29세가 19개 국가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0세에서 34세로 규정한 국가들은 10개로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는 20세에서 24세, 그리고 19세 이하와 35세에서 39세가 2개로 가장 적었고 40세 이상을 규정하는 곳은 없었음.
- 25-29세로 규정한 국가들과, 30-34세로 규정한 국가들의 차이는 성인기 이행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구조적 요인을 고려해 해석해 볼 수 있음. 25-29세 그룹 국가인 북유럽·서유럽 국가들과 북미 국가들은 교육·취업·독립·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이행 경로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인데 비해, 30-34세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유교문화권(한국·일본)에 해당하며 일부 남유럽·동유럽 국가들도 가족과의 동거 기간이 길고, 경제적 독립이 늦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다른 한편, 40세 이상으로 청년을 규정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40대를 포함해 청년을 정의하는 흐름과는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168)이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을 청년 상한 연령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전체 149개 국가 중 네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3개 국가에 불과했음.

[표 1] OECD 국가들의 청년연령 규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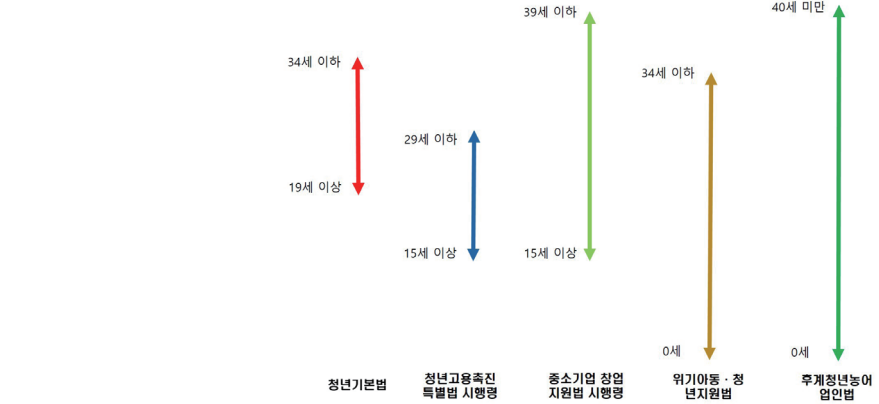
	구분	국가 수	국가명
하한연령	0세부터	7	벨기에,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
	1-9세	4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10-14세	18	호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영국, 체코
	15-19세	9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20세 이상	0	-
상한연령	19세 이하	2	이스라엘, 영국
	20-24세	5	호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25-29세	19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미국
	30-34세	10	벨기에, 체코,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스위스, 체코
	35-39세	2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40세 이상	0	-

출처: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7: 168-169). Youthpolicy.org(2025)에서 최근 업데이트한 국가별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활용해 수정함. 청년 연령 규정은 법률, 정책보고서, 통계 작성 시에 달리하고 있어 연령 범위(하한 연령은 0세부터, 10-14세, 15-19세, 상한 연령은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로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법률과 조례의 청년 연령 정의 현황

- 우리나라의 청년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으나 제일 먼저 법제화가 이루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법률에서 연령을 정의하지 않고 시행령에 이를 위임함. 시행령의 연령 정의를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어 청년기본법과 차이가 존재함. 다만, 상한연령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에 한해 34세까지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음.
 - 이 밖에 창업을 다루는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법률에서는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을 고려해 34세 이하로 아동·청년을 정의하였음. 다만,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률은 34세 이하 중 18세는 아동이나 청년으로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 연령 정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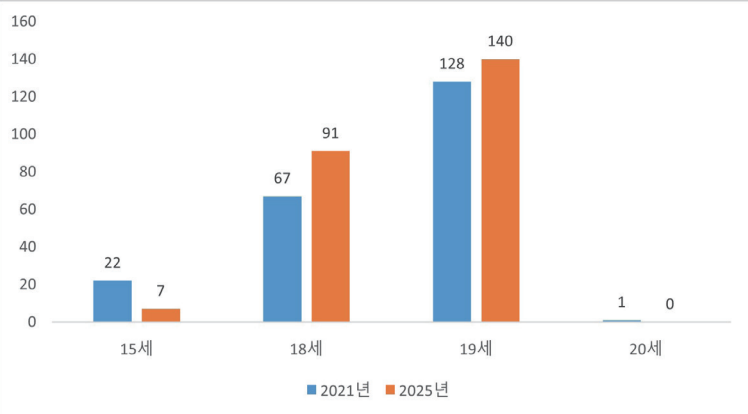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상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 연령정의에 단서조항을 달아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다르게 청년 연령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함.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그림 1] 우리나라 법률의 청년연령 정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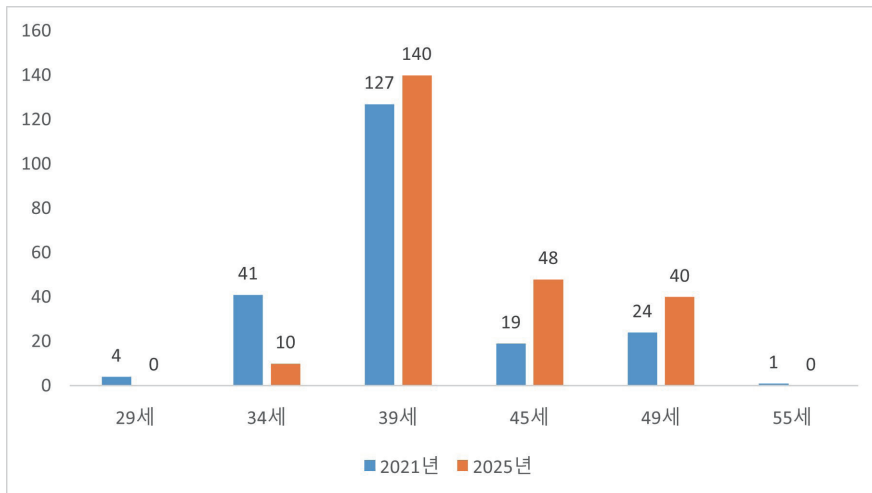
- 2025년 현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년연령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하한 연령을 보면,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19세를 대부분의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 제정 직전인 2021년과 비교해 볼 때 12개의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청년 하한 연령을 19세로 규정했는데 18세로 새롭게 청년 연령을 규정한 곳이 24개로 더 많았음. 18세로 청년 연령을 낮춘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15세 하한 연령 규정은 22개 지자체에서 7개 지자체로 크게 감소하였음. 가장 많은 국가들에서 15세를 하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15세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그림 2] 우리나라 지자체 조례의 청년 하한연령 현황

- 이어서 상한 연령을 살펴보면, 2024년 현재 39세 상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14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볼 때 13개 지자체가 증가한 결과임. 반면,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4세 상한 연령은 2021년 41개에서 2025년 10개 지자체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에 청년연령을 법률과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 개정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법률에 따라 연령 정의를 조정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난 것임. 더불어 45세와 49세로 상한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지자체는 88개로 나타났음. 2021년과 비교해 45세 상한 연령 규정은 27개, 49세 상한 연령 규정은 16개 지자체나 늘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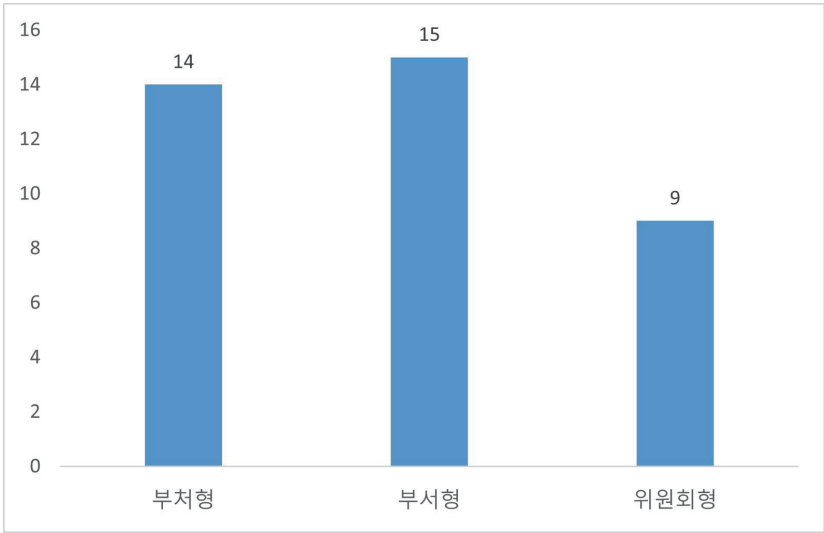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그림 3] 우리나라 지자체 조례의 청년 상한연령 현황

- 이러한 결과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한 지자체에서 정책 대상이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상향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변화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갈수록 정책 취지와 멀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함. 동시에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도 기존 청년이 나이가 들수록 지원을 늘리는 선택을 한 것이어서 신규 청년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청년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존재함.

▶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 중앙행정조직 현황

- 부처형과 부서형, 그리고 위원회형으로 청년정책 중앙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부서형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처형이 14개로 뒤를 이었음. 위원회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9개로 가장 적었음.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이 189개 국가를 부처형태와 위원회형태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는데, 부처형과 부서형을 합친 부처형태의 경우 149개 국가로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연구에서는 부처나 부서 명칭에 청년(youth) 포함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71.8%(107개 국가)에서 청년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정부정책 추진 시에 청년정책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음.



출처: Youthpolicy.org(2025),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2023), 이영란(2024)에서 업데이트한 국가별 청소년정책 현황 자료를 활용해 수정함.

[그림 4] OECD 국가의 청년정책 중앙행정조직 현황

▶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 법률 제정 여부

- 이어서 법률 제정 여부를 살펴보면, 16개 국가에서 청년정책 법률을 제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적 근거 없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22개 국가로 법률 제정 국가보다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OECD와 같이 경제 수준이 뒷받침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 법률 제정 여부

청년정책 법률 제정 국가 (16개국)	청년정책 법률 부재 국가 (22개국)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칠레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 스위스, 영국

출처: Youthpolicy.org(2025),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2023), 이영란(2024)에서 업데이트한 국가별 청소년정책 현황 자료를 활용해 수정함.

-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91년에 청년을 포괄하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시에 기본법을 모법체계로 하위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청소년 법령을 보면, 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잇달아 제정된 바 있음. 청년 법령 역시 기본법 외에 고용을 관장하는 법률(「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복지를 다루는 법률(「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법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기본법의 정책 영역에 따라 하위법령을 구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4. 정책제언

▶ 청년 연령 현실화 방향

-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5세 이상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곳은 2개에 불과했음.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40대를 포괄해 청년연령을 청년기본조례에 규정하고 곳이 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임. 지방소멸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청년 연령을 높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반면,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2022년 개정으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음.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 역시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필요함. 2022년 선거권을 18세로 낮춘 일본은 「민법」 개정을 통해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음. 우리나라 역시 「민법」의 성년을 18세로 낮추면서 동시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부행정조직 청년 명칭 부여

- 전 세계적으로 107개 국가가 부처나 부서명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고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가 부처 명칭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누구나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정부행정기관이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청년 명칭을 향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경우 1981년에 체육청소년부로 부처 명칭에 정책 대상이 명시된 적이 있으나 198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문화체육부)되면서 없어진 후 현재 어디에서 청소년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 사무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관장해 왔으나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임.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애 전반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처 명칭에서조차 빠져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체계의 정비

- 청년정책의 법적 체계는 기본법을 모법체제로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률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기본법에 제시하고 있는 시책은 일자리(제17조 취업, 제18조 창업), 교육(제19조), 주거(제20조), 복지(제21조), 금융생활(제22조), 문화(제23조), 국제교류(제24조)로 제시되어 있음. 현재 청년 관련 법률 제정은 특정 이슈에 따라 제기되고 제정되는 형태로 기본법이 제시한 시책을 포괄하는 법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법률이 양상되고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음. 기본법의 시책을 기본으로 포괄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는 법률로 취약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와 전달체계를 특정 대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동시에 별도로 법적 체계를 갖춘 아동 지원을 특정 대상에 한해 통합적으로 제시해 법적 불일치 문제도 갖고 있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과의 조율도 필요해 보임.
- 한편, 일자리는 기본법 제정 전에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청년의무고용제와 같이 규제 성격의 조항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8년, 2021년과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된 바 있음. 현재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내년에 다시 연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법제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 세종: 국무조정실.
- 김기현(2021).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세종: 기획재정부.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자원에 관한 법률.” “민법.” “아동복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2023). 청년정책의 법적, 행정적 기반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사회복지정책 50(3): 145-169.
-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정은진, 김기현(201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9(1): 117-143.
- 이영란(2024). 청소년 연령 법적기준 및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리포트. 서울: 여성가족부.
- YouthPolicy.org(2023). Fact sheets. <https://www.youthpolicy.org/>.

부록표

[부록표 1]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 중앙행정조직 현황

국가명	유형	중앙행정조직
호주	부서형	가족·젊은이국 (Department for Family and Youth)
오스트리아	위원회형	젊은이위원회 (State Secretariat for Youth)
벨기에	부처형	플랑드르공동체 문화·젊은이·미디어부/ 프랑스공동체 젊은이서비스/독일어권공동체 문화·젊은이부 (Flemish Community - Department of Culture, Youth and Media / French Community - Youth Service / German-speaking Community - Department of Culture and Youth)
캐나다	부처형	여성·성평등·젊은이부 (Minister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and Youth)
콜롬비아	부서형	국가젊은이국 (National Youth Directorate)
코스타리카	부처형	문화젊은이부 (Ministry of Culture and Youth)
체코	부처형	교육·젊은이·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덴마크	부처형	아동교육보건문화부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Health, Culture)
에스토니아	부서형	젊은이·인재정책국 (Department of Youth and Talent Policy)
핀란드	부서형	교육문화부 젊은이·체육정책국 젊은이과 (Youth Division, Department for Youth and Sport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프랑스	부처형	교육·젊은이부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nd Youth)
독일	부처형	가족·노인·여성·젊은이부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그리스	위원회형	직업교육·평생학습·젊은이위원회 (General Secretariat for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Lifelong Learning and Youth)
헝가리	부서형	문화혁신부 가족차관보실, 젊은이국 (Ministry of Culture and Innovation, State Secretariat for Families, Deputy State Secretariat for Youth Affairs, Department of Youth Affairs)
아이슬란드	부처형	교육아동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hildren)
아일랜드	부처형	아동·평등·장애·통합·젊은이부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이스라엘	부서형	교육부 젊은이·사회행정국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ociety Administration)
이탈리아	부처형	젊은이부 (Ministry of Youth)
일본	부처형	아동·가정청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라트비아	위원회형	교육과학부 산하 젊은이국제프로그램국, 젊은이자문위원회 (Youth Advisory Council, Agency for International Youth Programs,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리투아니아	부서형	젊은이국 (Department of Youth Affairs)
룩셈부르크	부처형	교육·아동·젊은이부 (Ministry of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멕시코	부서형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국가명	유형	중앙행정조직
네덜란드	부서형	보건복지체육부 / 법무안전부 / 사회고용부 / 교육문화과학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뉴질랜드	부처형	젊은이개발부 (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노르웨이	부서형	아동 · 젊은이 · 가족국 (Department of Childhood, Youth and Family Affairs)
폴란드	위원회형	폴란드젊은이위원회 (Polish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
포르투갈	위원회형	교육부 산하 젊은이 · 체육위원회 (Secretariat of State for Youth and Sports, Ministry of Education)
대한민국	부서형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Youth Policy Coordination Office, Prime Minister's Secretariat / Youth Policy Bureau,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슬로바키아	위원회형	슬로바키아젊은이위원회 (Slovak Youth Institute)
슬로베니아	부서형	교육과학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Sport)
스페인	위원회형	젊은이위원회 (Institute for Youth)
스웨덴	부서형	보건사회부 산하 보건 · 시민사회국 (Division for Health and Civil Society,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스위스	부서형	연방사회보험청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튀르키예	부처형	젊은이체육부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영국	부처형	아동 · 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미국	위원회형	젊은이프로그램정부합동실무그룹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칠레	위원회형	국가젊은이위원회/국가젊은이자문회의 (National Institute for Youth/Youth Advisory Council)

[부록표 2]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 법률

국가	법률 명칭
오스트리아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2000)
콜롬비아	Ley de Juventud (1997)
코스타리카	Ley General de la Persona Joven (1998)
에스토니아	Youth Work Act (2010)
핀란드	Youth Act (2016)
독일	SGB VIII –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1990)
아이슬란드	Youth Act (2007)
일본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09)
라트비아	Youth Law (2008)
리투아니아	Law on Youth Policy Framework (2003)
룩셈부르크	Youth Law (2008)
네덜란드	Youth Act (2015)
대한민국	청년기본법 (2020), 청소년기본법 (1991)
슬로베니아	Public Interest in Youth Sector Act (2010)
스웨덴	Youth Policy Bill (2004)
칠레	Ley N°19,042 (1991)